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 강대식 · 이종배 · 권영세

임종득 · 김예지 · 구자근

배준영 • 유용원 • 이인선

안철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· 추락·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공항공사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,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6조 등).

법률 제 호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비행승인(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비행승인(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6항에 따른 승인"으로, "접근하거나 침입한"을 "접근 또는침입하거나 공항·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"으로, "항공안전"을 "안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"제3호"를 "제4호"로 한다.

4.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・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 행위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재해・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・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・관리하는 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

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 다.

③ 제56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공항·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금지행위) ①・② (생	제56조(금지행위) ①・② (현행과
략)	같음)
③ 누구든지 항공기, 경량항공	3
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	
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	
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	
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	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자는 「항공안전	
법」 제127조의 <u>비행승인(같은</u>	<u>비행승인(같은</u>
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	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
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	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
<u>포함한다)</u> 을 받지 아니한 초경	포함한다) 및 제6항에 따른 승
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	<u>인</u>
장에 <u>접근하거나 침입한</u> 경우	접근
해당 비행장치를 퇴치·추락·	또는 침입하거나 공항ㆍ비행장
포획하는 등 <u>항공안전</u> 에 필요	의 내부에서 비행하는
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
	<u>안전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,	6

사업시행자등, 항행안전시설설 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 ·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해 당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아니 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3호</u>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대통령

•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
고하 비체자이 비브레셔 비

4.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・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하는 행위(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재해・제난 등으로 인한 수색・구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송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・관리하는 자에게 사전에통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<u>5.</u>	 	 	제4호	
-	 	 		
_	 	 		
_	 	 		

명으로 정하는 행위
⑦ (생 략)
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
일부개정법률
제6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<신 설>

- ③ ~ ⑤ (생 략)
- ⑥ 제1항부터 <u>제5항</u>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⑦ (현행과 같음)법률 제20291호 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

제69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56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 광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항·비행장의 내부에서 비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<u>④</u> ~ <u>⑥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

-----.